

**건강과대안,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지식연구소 공방, 진보3.0,
청년정의당,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민중건강운동**

보도자료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복지부 및 보건의료 담당

발신 :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문의 :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010-9697-0525)

제목 : [공동성명] 한국정부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전 세계 시민이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TRIPS 유예안'을 지지해야 한다.

날짜 : 2021년 2월 3일(화) 총 4매

[공동 성 명]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전 세계 시민이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TRIPS 유예안'을 지지해야 한다.**

우리는 오는 2월 4일 개최될 세계무역기구(WTO) TRIPS 이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 특정 조항 유예안'을 지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이미 1억 명 이상의 인구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았고 200만명 이상이 코로나19로 사망하

였다. 다행히 몇몇 의약품이 개발되어 코로나19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사용될 수 있게 되었지만, 개발된 치료제와 백신은 특허 독점 때문에 막혀서 국가별로 매우 불공평하게 사용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지난해 미국은 자국 제약사 길리어드가 생산한 코로나19 임시치료제 렘데시비르 3개월 생산 물량을 거의 독점한 바 있다. 특허로 인해 특정 회사만 이를 생산·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최근 유럽연합도 유럽에서 생산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백신 또한 특허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특허 독점으로 인해 백신 구매 계약도 민간제약회사 우위로 매우 불공평하게 진행되고 있다. 고소득 국가들은 이미 자국 국민들의 2~5 배에 달하는 백신 구매계약을 하고 있지만, 저소득국가들은 단 한 건의 직접계약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이를 두고 ‘파멸적인 도덕적 실패 직전에 있으며, 결국 팬데믹을 연장할 뿐’이라고 비판하였다. 고소득 국가들은 2021년까지 집단면역 수준의 백신접종에 이를 수 있는 백신 구매계약에 성공하였지만 저소득 국가들은 2023년에야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비단 저소득 국가들에만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국가별 백신 접종의 불평등은 바이러스 변이에 대한 위험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감염병 위기를 장기화 시킬 수 있다. 결국 선진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위해 백신구매 경쟁을 벌였지만, 백신을 접종하고도 감염병 위기에 계속 노출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차별과 불평등, 그리고 팬데믹의 실질적 해결을 가로막는 특허독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요하다. 코로나19 의약품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전 세계가 공유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2일,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인도 정부는 TRIPS의 일부 조항의 적용과 이행의 유예를 제안하였다. 이 유예안은 코로나19 관련 의료기술에 한하여 TRIPS협정 제2부 제1절(저작권), 제4절(산업디자인), 제5절(특허), 제7절(미공개 정보의 보호)과 이들의 제3부에 따른 집행의 일시적 유예를 제안하고 있다. 만일 국제사회가 WTO 수준에서 이 유예안을 채택할 경우, 코로나19 예방, 억제, 치료에 관하여 위의 조항에 관한 의무는 유예되고, 특허 독점이 대폭 완화된다.

이 유예안에 대해 이집트, 케냐, 볼리비아, 파키스탄을 비롯한 100여개 국가와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에이즈계획(UNAIDS),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를 비롯한 국제기구 및 수백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지지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 19 관련 기술개발 독점에 유리한 미국, 영국, 유럽연합(EU)을 비롯한 고소득 국가들이 유예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히거나 침묵하면서,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

례의 WTO TRIPS 이사회에서는 유예안의 채택을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우리는 한국 정부 역시 계속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말로는 국제무대에서 수 차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경을 넘은 협력’과,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의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의 공평한 보급’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실제 이런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침묵함으로써, 코로나19 의료기술이 공공재로 취급되지 않고 자국 우선주의와 국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일을 방조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한국 정부가 오는 2월 4일 TRIPS 이사회를 맞아 TRIPS 유예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고, 위기 앞에서 각자 도생이 아닌 연대와 협력을 위한 방법을 시민사회와 함께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지키지 않을 약속을 남발하는 대통령은 국민들과 전 세계 시민들에게도 불신과 냉소를 낳을 뿐이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진정으로 공공재가 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은 TRIPS 유예안을 지지하고 백신 배분정의에 대한 의지를 실천해야 한다.

2021년 2월 3일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지식연구소 공방**, **진보3.0**, **청년정의당**, **한국YMCA 전국연맹**, **한국민중건강운동**(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첨부: 코로나19의 예방, 억제, 치료를 위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의 특정조항 유예 (한글 번역)

코로나19의 예방, 억제, 치료를 위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의 특정 조항 유예 (한글 번역)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인도의 제안

2020/10/02

TRIPS 이사회

1.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1월 30일 코로나19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로 선언하였고, 2020년 3월 11일에는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선언했습니다.
2. 세계무역기구(WTO)는 "전 세계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축소됨에 따라 팬데믹이 세계 경제와 무역에 전례 없는 혼란을 나타낼 것"이라 경고했습니다.¹ 우리는 수요-공급 간극의 증가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를 목격했습니다.
3. 이러한 글로벌 비상사태의 맥락에서, WTO 회원국은 지적재산권(특허, 산업 디자인, 저작권 및 미공개 정보의 보호 등)이 백신 및 의약품에 포함된 의료제품에 대한 감당가능한 가격과 적시의 접근 혹은 코로나19 극복에 필수적인 의료 제품의 연구, 개발, 제조 및 공급의 확대에 장벽을 만들지 않도록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코로나19 팬데믹은 현재 대부분의 WTO 회원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1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333,722,075명이 확진 되었고 1,009,270명이 사망했습니다.² 현재까지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습니다. 모든 WTO 회원국은 팬데믹의 확산을 억제하고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은 증가하는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WHO의 조언에 따라 사회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은 특히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5.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예방과 치료를 위한 백신과 치료제 만이 아니라 진단 키트, 의료용 마스크, 기타 개인보호장비(PPE), 인공호흡기와 같은 의료제품에 대한 감당가능한 가격과 신속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6. 많은 국가가 급격한 공급 부족에 직면하였고, 전 세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료제품 공급 부족은 보건의료 및 다른 필수노동자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리고, 피할 수 있는 많은 사망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더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의 세계적 위기가 오래 지속될수록 사회 경제적 타격이 더 커지므로, 신속하게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

¹https://www.wto.org/english/news_e/news20_e/trip_10dec20_e.htm

²https://covid19.who.int/?gclid=Cj0KCQiAx9mABhD0ARIsAEfpavRovSJnAklwQNGx13Tva7x4Z81ESBmOfEQUDos0y2IBuiD3gxMJetaAajG3EALw_wcB

이며, 시급합니다.

7. 코로나19에 대한 새로운 진단 키트, 치료제 및 백신이 개발됨에 따라, 이들 제품이 글로벌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과 저렴한 가격으로 신속히 가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중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의료 제품의 심각한 부족으로 다른 감염성 및 비감염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 또한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8. 증가하는 공급-수요 간극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은 의료 제품의 국내 생산을 시작했으며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를 위해 기존 의료 제품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생산을 빠르게 확장하는 것은 필요로 하는 모든 국가에서 의료 제품에 대한 적시의 가용성과 구매 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해 분명하고 결정적인 해결책입니다.

9. 지적재산권이 환자에게 저렴한 의료 제품을 적시에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잠재적으로 방해한다는 여러 건의 보고가 있습니다.³ 또한 일부 WTO 회원국은 강제실시 및 정부사용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해 자국의 특허법을 긴급히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 특허 이외에 다른 지적재산권들도 장벽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제한적입니다. 또한 많은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은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 협정 (TRIPS)에 따른 유연성(flexibilities) 조항을 사용할 때 제도적 및 법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TRIPS 협정 제31조의2는 제조 능력이 불충분 하거나 없는 국가를 대상으로하며, 결과적으로 의약품의 수입 및 수출을 위한 복잡하고 기나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11. 전 세계적인 연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코로나19 해결을 위한 신속한 대응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과 노하우의 방해받지 않는 세계적 공유가 필요합니다.

12.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TRIPS 이사회가 가능한 빨리 코로나19의 예방, 억제, 치료와 관련하여 TRIPS 협정 제2부의 제1, 4, 5, 7절의 이행, 적용 및 시행에 대한 유예를 일반 이사회에 권고할 것을 요청합니다.

13. 유예는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예방 접종이 시행되고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면역을 획득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하며, 따라서 유예 채택일로부터 [x]년의 초기 기간을 제안합니다.

14. 우리는 TRIPS 이사회가 첨부된 결정문의 채택을 일반이사회에 시급히 권고할 것을 요청합니다.

부록

결정문 초안

코로나19의 예방, 억제 및 치료를 위해, TRIPS 협정의 특정 조항 유예

일반이사회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WTO 협정")의 제9조 제1, 3, 4항을 고려하여;

³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0-03-20/world-war-ii-style-production-may-carry-legal-risks-for-patriots>

WTO 협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각 회의 사이에 각료회의 기능을 수행하여;

코로나19가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2 (SARS-COV-2)로 인한 새로운 감염병임을 주목하여;

2020 년 3 월 11 일 세계보건기구 (WHO)가 2019-20년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을 팬데믹으로 선언했으며 모든 WTO 회원국에서 계속해서 매우 높은 위험이 되고 있음을 상기하여;

전 세계로 퍼진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사람들의 건강, 안전 및 복지에 대한 위협, 그리고 사회, 경제, 세계무역 및 여행의 심각한 붕괴, 사람들의 생계에 대한 엄청난 영향을 포함하는 전례 없는 전염병의 다면적 영향을 주목하여;

코로나19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개인보호장비 및 인공 호흡기를 포함한 저렴한 의료제품에 막힘없이 적시에 접근할 수 있는 필요성을 인식하여;

코로나19 팬데믹이 통합, 연대 및 다자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대응을 요구함을 인식하여;

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TRIPS 협정 의무의 유예를 정당화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함에 주목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1. TRIPS 협정의 제2부의 제1, 4, 5 및 7절을 시행/적용하거나 TRIPS 협정 제3부에 따라 이들 조항을 시행할 회원국의 의무는 일반이사회의 결정으로부터 [x]년간 코로나19의 예방, 억제, 치료와 관련하여 유예됩니다.
2. 제1항의 유예는 TRIPS 협정 제14조에 따른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기관의 보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이 결정은 TRIPS 협정 제66조 제1항에 따른 최빈개도국회원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4. 이 유예안은 WTO협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지 1년 이내에 일반이사회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유예가 종료될 때까지 매년 검토되어야 합니다.
5. 회원국은 본 결정에 포함된 유예에 따라 취해진 조치에 대해 1994년도 GATT 제23조 제1항(b) 및 1(c)에 따라, 또는 WTO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통해,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됩니다.

(끝)